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 양 우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에는 ‘6개월 이내 영업정지’(1차 위반 영업정지 10일,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,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, 4차 위반 이상 영업정지 6개월)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‘등록 취소’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(별표 1 행정처분)

나.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에서 등록 취소로 변경됨에 따라 영업정지에 따른 과징금 금액기준을 삭제(별표2 과징금의 금액기준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 예정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2호다목 및 라 목을 각각 라목 및 다목으로 하고, 다목(종전의 라목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법 제2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. 다만, 법 제27조제5호에 해당하여 해당 임원을 3개월 이내에 다시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.	법 제33조제1항제3호	등록 취소			
---	--------------	----------	--	--	--

별표 2 제2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대중문화산업과	
연 락 처	044-203-2464